

발전기금관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전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겸임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발전기금의 관리·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및 수익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5. 기타 발전기금의 모금사업·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와 서기가 관리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발전기금팀장으로 한다.

제8조(사무의 주관) 위원회의 사무는 발전기금팀에서 주관한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